경찰의 사생활 비밀 침해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Privacy Infringement of The Police

김수원(Kim, Su Won)*

ABSTRACT

Traditionally, the concept of privacy rights was not strongly recognized in our country. However, with the rapid spread of the Internet in recent years, concerns and interests grew in terms of guaranteeing privacy, triggering the gradual increase of its awareness as a basic right for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a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as such rights grow in importance, the damage due to infringement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becomes relatively more serious, which frequently occurs in groups that are so-called authorities. Therefore,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e offices that have a relatively easier access in terms of disclosing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more cautious in managing information. The reason is thatdiscretionary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such institutions may be at great risks, and since the possibility for them to improperly collect and use private information has recently grown, appropriate yet strong regulating measures are needed to control this situation.

In light of the critical police behavior of infringing upon private secrets and improperly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which has been growing rapidly each year despite the provision on rights of the secrets of privacy and freedom in the Constitution, it is important to discuss protection of privacy through police activities. Of course, there may be various issues and limitations to deal with, but unless they are overcome, it will not be compatible with the information society and a society that respects human rights.

Key Words : 사생활침해(Privacy Infringement), 인권(Human Rights), 경찰(Police)

I. 머리말

사생활이란 '국가와 관련이 없는 공적이지 못하거나 공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지칭할 수 있다(최갑수, 2002: 146). 또한 사생활권은 미국적인 전통을 가지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권리개념으로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판사가 1890년 '하버드 로우 리뷰'(Harvard Law Review)에 기고한 논문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에서 처음 정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1)]

*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 이들은 1888년 처음으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사용한 토마스 쿨리 판사의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말을 인용하여 언론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생활권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보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면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인식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가 커질수록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난다. 침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개인의 사적 생활이 그대로 노출되어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상호간 사적 침해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이것을 주로 이용해야만 하는 소위 권력기관이라 일컫는 집단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인 정보의 접근 등이 손쉬운 공공기관 및 경찰관서는 더욱 정보관리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들에 의한 정보의 자의적인 유출은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정보보호의식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부정한 수집·이용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다른 적절하고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생활의 일부로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개인정보의 공개에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두개의 권리가 공존한다 할 수 있는데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보호가 그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여기에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에 반하여 해마다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경찰의 사생활 비밀 침해 및 부당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 경찰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경찰업무를 통한 사생활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려 한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정보화 사회 및 인권존중의 사회에 대응할 수가 없다.

이는 언론매체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대중매체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권의 비교형량은 크게 동의(consent), 뉴스가치(newsworthiness), 공적이익(public interest), 훤히 보임(plain view)의 면책사유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Smolla, 2000).

하지만 경찰에 있어서의 사생활침해 및 정보유출은 이러한 것과는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한 예로 범죄사실 및 범죄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정보들은 공적이익과도 무관하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하는데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피의사실의 공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증가되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사례에 대한 접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에 유의해야 하며 경찰은 지역주민과의 관계, 여러 활동과 제도, 교육 등을 통하여 사생활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Ⅱ. 예비적 검토: 논의의 배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생활권이 제한적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항의 공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생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윤명선, 1986: 113).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언론의 자유라는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저울질 할 수 있는 객관적 틀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침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언급을 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다루지는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개 사생활권의 문제는 ①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②통신 프라이버시(Communication Privacy), ③신체상의 프라이버시(Biometics Privacy), 그리고 ④공간검색 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영화, 2001).

특히 본 논문과 같이 경찰과 관련된 사생활 비밀 침해를 다룰라 치면 좀더 한정지어 언급할 수밖에 없다. 다양하면서도 한편으로 제한적으로 밖에 다룰 수 없는 이 부문에서 경찰과 사생활 비밀 침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라하면 첫째, 이들이 수집하고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인터넷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이 경찰이 개인 사생활을 자·타의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부추겼으며, 셋째, 공공의 목적이외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찰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이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언급할 수 도 있지만 본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이러한 연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급속한 정보화와 이의 발전이 세계화 및 국제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이 항상 순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의 오·남용을 감시하는 일은 정보화 사회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모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인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디지틀화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인구학적 기본통계, 교육, 재정, 의료, 신용정보, 고용, 납세, 출입국, 치안관련 자료, 사회복지, 군복무, 자동차 관리, 백화점, 사회단체, 금융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김진욱, 2004: 141-142).

특히 경찰은 어느 기관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이용하는 바, 개인정보의 노출에 항상 유의해야 하며 각 개인정보가 지니고 있는 위험 요

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등 국가기관들 이외에도 기업 및 개인들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들도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들은 경찰과는 처해진 여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개인 각자의 정보를 토대로 이들을 조정하고 이용하며 설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용불량자 등의 명목으로 사회적 고립을 꾀하거나 이들의 선택권을 제한시키기도 한다. 즉 이 영역에서 개인은 자신이 장악되고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들에 의하여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전자상거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장과 변화로서 사적 영역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은 경찰 등 정부기관의 그것 못지않게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어느 분야든지,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관계없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공·사를 막론하고 정보관련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예방업무 등 정보 관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찰기관의 책임 있는 행위가 더욱 요구된다는 점이 본 논 주제를 언급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급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는 적극적인 자기 정보의 홍보, 전자상거래의 발전, 정보민주주의의 실현 등의 긍정적 영향과 더불어 음란정보의 범람, 가치 있는 정보와 무가치한 정보의 혼돈, 컴퓨터 바이러스의 전파, 컴퓨터 해킹 등 종래의 문화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침해는 법률적으로도 네트워크 상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 전자우편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음란물 배포에 관한 법적 책임문제,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진욱, 2004: 143).

인터넷과 전산망의 이용은 경찰을 포함한 관공서, 기업, 학교 등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또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내부 전산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자·타의적 유출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기업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공무원들로 인한 개인자료 유출, 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개인정보의 이용 등 다양한 국내적 문제점들을 넘어 각 국가들 또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규가 명확히 제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범국가적 정보침해 행위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이나 개인의 일반 정보가 유출되는 것 이외에 국가기관의 비밀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과 컴퓨터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부추기며 이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을 논의할 수 있고

이 중요성에 대하여 경찰도 빨리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바램이 또한 본 논문을 설명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3. 경찰윤리의 해이

인간생활에서 '윤리'라는 단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매우 모호하여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한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윤리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도덕적으로 관계되는 도의, 또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길, 인간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등을 의미한다(조기주, 1979: 26). 따라서 윤리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하므로 '경찰윤리'란 경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찰조직은 전통적으로 개인책임보다는 소위 조직윤리를 강조한다. 조직윤리는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구성원간의 친화, 승진, 안전, 공공의 이익을 공유하는 대가로 충성과 기관의 전술과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Jun, 1987: 458). 이 윤리는 경찰공무원의 개인적 윤리나 동기와는 관계없이 충성심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는 복종의 형태이다. 그 결과 경찰공무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높은 차원의 도덕성으로 간주하게 되고 건설적인 이의제기나 반대는 위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직은 이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김 택, 2003: 106).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 윤리의 구성과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 자체도 많은 논의를 요구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전반적 이유는 기존의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아마 '전문성' 및 '자질'에 바탕을 둔 윤리에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경찰윤리와 관련하여 이것이 왜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사과정에서 습득한 피의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윤리 기준, 청소년이나 여성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방지 등도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윤리의식의 부족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올바른 윤리와 여러 경찰관련 지식, 그리고 수사의 기술이 합하여져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III. 이론과 사례

1. 개념적 정의

1)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을 의미한다고 볼 때, 기본권 중에는 이러한 국가 이전의 생래적 권리도 있지만 국가 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도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인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2].

하지만 이런 기본권에도 갈등이 따르고 서로 경합을 하기도 한다. 기본권의 갈등이라 함은 기본권의 주체인 각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을 주장하거나 사인 상호간에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기본권의 경합이라 함은 기본권의 경쟁관계에서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두 개 이상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그 중에서 어느 기본권을 얼마만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78).

사생활의 보장 및 비밀 침해 또한 개인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갈등과 경합이 따르며 특히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의한 갈등과 경합은 개인들끼리의 그것과는 달리 장기간 해결이 어렵기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2)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11).[3] 아울러 개인 및 회사,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여러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속을 더해주고 있기도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3) 사생활의 자유와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2)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64423(검색일: 2005. 3. 21)
3) 관련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고 판시된 바 있다.[4] 사생활의 보호는 종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980년 미국의 워렌·브렌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s to Privacy)'이라는 논문이 나온 이래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세계인권선언도 제12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간섭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의 하나에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으나 1970년 민법 제9조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정보의 관리·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분설하면,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라 함은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생활의 평온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되어야 하는 것이지 난처한 사사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하게 공표하여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④성명, 초상, 경력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이라 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 즉 사생활의 자율을 침해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개인보다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판단할 때 사생활의 비밀 문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155-156)[5].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의 사례 분석

미국에서는 실제로 사생활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침해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오랜 동안 논란이 지속되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유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이재진, 2002: 253). 프로서(Pross)는 300개 이상의 사생활 침해 판례를 분석하고 그 침해유형을 체계화하였는데 첫째, 개인의 성명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둘째, 개인의 평온(안위)을 침해하는 행위, 셋째,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 넷째, 공중을 오인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Prosser, 1960: 383-423).

이후 이러한 유형의 구분을 토대로 한 사생활법이 상당수의 주에서 만들어 졌다. 그

4) 서울고법 1995. 8. 24, 94구39262
5)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재인용.

러나 아직도 사생활권을 완전한 개인적 권리로서 보호하는 주는 몇 개 없으며, 법제적 보장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사생활권이라는 개인적 권리와 기타 다른 권리와 상충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아직도 해결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유일상, 2000: 130).

우리나라도 현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 표기인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표현이 보다 일반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는 바로 한국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준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6](성낙인, 2000: 188-190).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과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이미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식사회로의 발전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 등의 역기능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미보호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특히 경찰 및 컴퓨터와 관련되는 기본적 보안문제에서부터 각종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유출문제 등이 그것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유출, 인간관계에 의한 불법적 정보 유출은 물론, 해킹 등을 통한 적극적 유출 등 다양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례들을 통하여 경찰에 의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유형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자한다.[7]

1)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침해

중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중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경찰청에 진정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제공받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는 진정인들의 천부적 인권인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8]

6) 변재옥. 1994.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도와 명예훼손, 한국언론연구원, 207. 재인용.
이에 대해 김철수 교수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소극적인 권리로 이해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다고 본다. 김철수. 2000. 『헌법학개론』. 박영사. 467.

7) 이에 대한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유관 사건 중 인용 결정한 사안들을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침해 유형에 따른 소제목은 김진욱의 논문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증적 연구(2004)를 참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는데,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자료제공과 이용의 위법성, 수시적성검사 대상 선정·통보의 타당성 여부가 그것이다.

첫번째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관련이다.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생활의 비밀은 정신과 치료 병력에 관한 것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일정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그것이 알려짐으로써 주위나 사회로부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낙인 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인들의 정신과 치료 병력에 관한 사항은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진정인들 역시 정신과 치료 사실을 주변인들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숨기고 있었으며, 타인에게 치료사실이 공개되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담당조사관의 조사결과보고서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중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경찰청에 진정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제공받아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는 진정인들의 천부적 인권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자료제공과 이용의 위법성 관련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의 내부에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타 기관에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단서조항에 따라 위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그 보유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경찰청에 수시적성검사와 관련 있는 개인정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사건관련 자료의 제공과 이용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보 보유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병력에 관한 개인정보가 개인에게 미칠 사생활 침해 위험성의 치명성에 비추어 정보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8) 사건번호 02진인1036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2002. 7. 25.

공공의 이익에 현저하고 명백한 위험성이 현존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진정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의 적용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병력 특히 정신과 병력에 관한 사항의 공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 및 그 이용은 어느 점으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 번째는 수시적성검사 대상 선정·통보의 타당성 관련이다.

위의 논의들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의 책임면제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대상 선정·통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도 논하고 있는데 결론은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위법이며 병력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는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수시적성검사 해당자를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조치는 진정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헌법 제17조)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2) 개인정보의 비밀수집에 의한 침해

경찰관들이 특정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 없이 기소중지자 검거만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열람 등의 행위는 의료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대장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장에 있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9]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각 보건소에서 경찰관서 등의 요청을 받고 검진대장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장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검진대장의 기재사항 중 검진결과 등 문서로 요청하지 않은 정보가 회보되지 않도록 하며, 검진대장의 중복 열람 또는 사본의 이중 교부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경찰청장은 보건소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등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는 특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 보건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동안 검진대장에 기재된 명단'을

9) 사건번호 03진인1800. 국가인권위원회 제3소위원회 결정. 2004. 2. 2.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며, 보건소에 비치된 검진대장은 검진 대상자들의 취업한 업소명과 검진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검진대상에 기재된 전체정보를 포괄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서 발생한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배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보건소에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청자료가 당해 보건소가 일정기간 동안 접수한 검진대상 종업원 명단 전체를 포괄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특정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이들 종업원 모두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들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였고, 경찰관들은 보건소에 비치된 검진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검진대장에 등재된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발급받은 사본의 보관이나 폐기에 대한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비록 경찰의 검거 업무가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보건소에 비치된 검진대장을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검진대장을 열람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3) 부정확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침해

경찰이 개인의 범죄 경력 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경찰이 진정인의 범죄 경력 자료를 부당 취득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10]

피진정인인 담당경찰관이 진정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에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누설함으로써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진정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결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의 위 행위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10) 사건번호 02진인1373.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결정. 2003. 7. 7.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기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 자료 및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의 취급과 가공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 및 해당자 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악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여 이를 외부에 누설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는 기업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담당직원 2명이 대학 후배인 민간업자에게 약 1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를 넘겨준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김진욱, 2004: 147).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기록에 대한 침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CCTV를 들 수 있다.

몇 년 전 각종 납치사건이 잇따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일대에 강남경찰서와 강남구가 340여대의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것[11]을 놓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이 논란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2002년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시범적으로 5대의 CCTV를 설치한 결과 약 43%의 범죄감소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으며[12] 2000년 3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중생이 누군가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살해된 사건에서 아파트 출입구의 CCTV에 녹화된 용의자의 모습을 토대로 탐문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13]하는 등 용의자 확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한 적도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본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회신을 통해 24시간 CCTV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4] 변협은 개인정보의 비밀수집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에 대한 사전고지 및 그로부터의 동의 및 승낙을 전제로 하여 수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은 사적 공간에서의 권리만큼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호돼야 할 권리임은 분명하며 CCTV 촬영을 하면서 이 사실을 도로의 입구에 사전에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 및 승낙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

11) 한겨레신문 2003. 6. 25.
12) 국민일보 2003. 7. 3.
13) 한겨레신문 2000. 3. 19.
14) 세계일보 2003. 6. 30.

다(성선제, 2004: 79-80).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해당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처리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보의 주체인 각 개인에게 피해와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부분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수집된 정보가 각 기관 상호간에 교환되거나 전달되어 본래의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에 이용될 경우에 일어나게 되며, 항상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예를 들어 경찰이 개인에 관한 기록을 당사자의 참여 없이 비밀로 수집하고 관리할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취급하게 됨으로써 편견이 형성되어 개인에게는 큰 불이익과 불안감을 줄 수 도 있고, 개인에 대한 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실례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아 범죄피의자로 오인되어 수차에 걸쳐 경찰에 연행되어 부당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15]

Ⅳ. 경찰업무와 사생활보호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혹은 최소화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경찰관서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 제도, 시설 및 교육 등의 측면에서 - 경찰관 각 개인들은 활발한 대민관계 유지 활동 및 자질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대민관계

경찰관 각 개인들의 원활한 대민관계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먼저 주민과의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한 방법으로서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경찰은 활동의 많은 부분을 주민에게 의존하고 있다. 범죄의 예방과 후속조치도 주민의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에 의한 정보제공이 없다면 범죄의 인지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이 범죄예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집단이나 기관이 범죄예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한사람의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

15)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1370. 피진정인: 과천경찰서. 2004. 2. 11. 제2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자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는 인용결정을 하였다.

해서도 안되며,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통하여 경찰의 업무능력과 실적이 향상됨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밖에 없다.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경찰관을 증원하며 장비를 개선해도 주민의 협조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과잉단속, 권위주의적 행동, 부정부패, 불친절 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민원이나 사건사고를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의 준수로부터 보호되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선 개혁으로 기존 경찰서비스의 틀과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며 지역주민을 존중하고 이들이 나와 나의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한다면 고의적이든지 혹은 업무 편의적으로든지 간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통한 부당행위 및 불법행위는 결코 언급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며 주민의 사생활 또한 철저하게 보장될 것이다.

2. 자질

경찰관의 자질향상과 경찰관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및 윤리가 정립되어야만 한다.

경찰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경찰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부정부패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경찰관을 유혹하기 쉬우므로 경찰관 각자가 투철한 직업윤리를 갖고서 경찰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가 확립되어 있다면 경찰관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이 주민을 업신여기고 군림하려하는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태도를 극복하고 치안유지라는 경찰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며 이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언행과 태도로서 주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타파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관료가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면 배타적이고 귀속적인 행태를 띠게 되어 사람을 채용하거나 평가하는데 있어 실적이나 능력보다도 연고관계를 중시하는 사례가 나타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기 쉽다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또한 강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지니는 관료는 공·사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사유시 하며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경찰관은 행정 조직 내에서 학연, 지연 등으로

별도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쉽다.

권위주의적인 가치관을 타파할 수 있는 것도 경찰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경찰기관은 대부분의 정책이 고위층에서 이루어지며 하위층에서는 단지 상급자의 지시만 따르려고 하는 나머지 위임된 권한의 영역 내에서도 재량행위나 선택행위를 좀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보수성과 소극성이 더욱 강화되고 그릇된 선례가 답습됨으로써 경찰이 변화에 둔감하게 되고 경찰행위를 일정의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알고 보면 경찰의 자질문제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본다면 경찰로서 자질이 갖추어져야만 지역의 치안유지는 물론 개인의 개별 정보 및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3. 제도

각 경찰관서는 기존의 제도들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제도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및 개인 비밀 등을 잘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체제의 분권화라든지,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경찰의 주민들에 대한 사생활침해 사례가 급증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함으로써 극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찰의 그릇된 행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을 이용해 볼 수 도 있는데 법적차원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통제 전략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적용하며 이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

법적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으로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고 기구·제도적 차원에서의 통제 전략으로서 사정관련 기구의 강화와 부패방지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최상일 외, 2001: 82-83).

실제로 외국에서는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제도),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 노령자 보호 경찰프로그램, 조직폭력 퇴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약물남용 및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학교경찰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적용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비밀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부 제도 - 특히 학교 경찰 관련 제도들 - 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학생들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시설

경찰이 지식정보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과학

적 치안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치안서비스를 확충하고,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검거체제 또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치안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치안정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전 경찰관이 다양한 치안수요에 탄력적이고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메뉴얼화·시스템화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지침이 변경되고 법령과 규칙보다 일방적·즉흥적인 지시가 먼저 통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한 지시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새로운 지식 및 정보에 대해 시도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신 장비들에 대한 실무중심교육으로 업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전용찬, 2000: 404). 그래서 이에 대한 숙달로서 장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면 자연히 지역주민의 안전과 사생활이 확보될 것이며 인권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다양한 시설과 장비의 활용과 운용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해가 되기도 한다.

한 예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활용을 들 수 있다. GIS는 경찰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이다. 경찰은 범죄를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통한 범죄 지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수사, 방범, 대책수립 등에 직접 적용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이현희, 2000: 314).

반면 이를 통한 개개인의 포괄적 및 직접적 정보의 수집(관할지역 거주민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위치추적 문제 등 수사의 과학화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사생활의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안이라 할 수 있다.

5. 교육

인권교육은 일회성 단기적 행사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반을 닦는 장기적 과제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발전도 국민의 인권의식 위에서만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사생활의 중요성과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은 이러한 인권교육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방대한 양의 범죄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건만을 다루려는 지배적인 경향 때문에 여러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기도 하여 체계성이 없을 수도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하여 역설적이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선입견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되는 자료만을 적절히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집된 정보의 누설과 노출에 대한 사례 교육,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정립 교육,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릇된 정보 노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양심 교육 등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및 전산화에 인권이란 문제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V. 맺는말

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범죄에 대한 통제와 대처이며 경찰의 임무가 범죄자의 체포와 범죄사건의 수사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범죄문제가 모두 경찰의 책임이며, 경찰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범죄와 직접 관계된 업무이고 그 밖의 다른 경찰업무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경찰도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체포하여 범죄에 대응하는 범죄 진압자로서의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하였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은 통제의 대상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경찰은 지역주민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과도하게 이를 사용하고 적용시키기도 하였다.

경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다양하고 단순하지 않은 쟁점으로 여겨져 왔다. 더욱이 일상적인 공간이 아닌 경찰의 영역이라는 특이한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기존의 여타 국가기관 및 기업들에 의해 발생되는 사생활권 침해와는 다른 형태의 법적용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경찰활동을 통한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지역주민의 인권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치안 및 질서유지에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될 수만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 복지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해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과제들로는, 법적·제도적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와 보완, 여러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규제의 강화방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감독기구의 설립,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 보완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경찰관의 자질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는 요즘 각 지역 및 지방 실정에 맞는 정보관리 체제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중앙경찰기관과 지방경찰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 문제를 분명히 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찰관들이 지역 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일반인이 사생활의 침해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 부당하게 이용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최대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집된 목적과는 상이한 측면으로 활용되는 것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론 위에 언급된 내용들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구와 법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개인 및 민간부문의 정보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상호 연결되어 확산되고, 이것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뒷받침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권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일차적으로 경찰이 수행해야 할 당연하고도 고유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영호 외. (2002). 『핵심법률용어사전』, 서울: 청림출판.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용어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진욱. (2004).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토지행정학회보』제11권 1호. 한국토지행정학회.

김철수. (2000).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김 택. (2003). “경찰공무원의 국가윤리정립에 관한 연구.”『한·독사회과학논총』제13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노호래. (1997). “미국경찰의 문제지향활동과 한국경찰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고찰.”『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집. 한국공안행정학회.

변재옥. (1994).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보도와 명예훼손』. 한국언론연구원.

성낙인. (200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사생활비밀)보호.”『한일법학연구』. 한일법학회.

성선제. (2004). “사이버공간과 사생활보호.”『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랜드 시리즈』 04-15. 정보통신연구원.

윤명선. (1986).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역사적 고찰.” 『경희법학』 20권 1호.

이재진. (2002). “사생활 침해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의 가상공간에의 적용성 연구.”『한국방송학보』통권 16-4. 한국방송학회.

이현희. (2000). “경찰의 범죄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방안.”『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1집. 한국공안행정학회.

전용찬. (2000). “한국경찰개혁의 성과와 발전방향.”『한국경찰학회보』제2집. 한국경찰학회.

정영화. (2001).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을 중심

으로.” 『헌법학연구』 6권 3호(11월호).
조기주. (1979).『국민윤리』, 서울: 박영사.
조동기. (1998).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스.”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최갑수. (2002). “사생활의 역사-개인, 가정, 국가.”『프랑스사연구』. 한국프랑스사학회.
최상일 외. (2001). “관료부패 통제전략에 관한 논의(I).” 『지방자치』12월호. 현대사회연구소.
한위수. (1999).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19권 여름호.
Jong S. Jun. Public Administration저・윤재풍. 정용덕 공역. (1987). 『행정학』, 서울: 박영사.
Prosser, W. (1960).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48, 383-412.
Smolla, R. A. (2000). “Law of defamation.” New York: West Group.
서울고법. 94구39262. 1995. 8. 2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국민일보 2003. 7. 3.
세계일보 2003. 6. 30.
한겨레신문 2000. 3. 19.
한겨레신문, 2003. 6. 25.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64423(검색일: 2005. 3. 21).

저자 약력 : 저자는 전북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하여 현재는 전주시 교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수사관행에서 나타난 경찰윤리의 해이, 한국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의 인권보호 향상방안 -경찰서 유치장 실태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인권과 경찰 : 정신의료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